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324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3249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1291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애리

변론종결 2021. 6. 25.

판결선고 2021. 9. 10.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12916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5,000,000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제1심판결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조 내지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기초사실 및 3.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인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① U에 대한 2011. 11. 8.자 대여금 채권 3000만 원과 2011. 11. 27.자 대여금 채권 4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② 형인 V와 어머니인 W 명의로 별개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추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11. 11. 8.자 차용증(을 제15호증)만으로는 그 채권자를 알 수 없고, 2011. 12. 27.자 차용증(을 제16호증)에 기재된 채권자는 C가 아니라 V이며,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봐도 C가 V 명의로 U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대여금 3000만 원 채권의 변제기는 2011. 11. 18.이고, 대여금 4000만 원 채권의 변제기는 2012. 1. 26.인바, 그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현재까지 위 각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차용증에는 ㉠ 채무자 U의 서명은 있으나 날인이 없고, ㉡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채권자가 V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위 채권들이 C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라거나 그에 관하여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①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V 명의로 2007. 5. 4. 경기 양평군 X 임 87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W 명의로 2011. 11. 28. 경기 양평군 Y 목 166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C가 위 각 토지를 V, W에게 각각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최초납부기한이 2012. 8. 6., 2015. 9. 30., 2017. 10. 17.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정만 알 수 있고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W 명의 토지는 그 후 Z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C가 W을 통해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②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지현, 판사 이일엽, 판사 신상렬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P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

Q아파트 R동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김포군 S 대 3299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T호 철근콘크리트조 59.8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2994.0분의 29.3021

